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부여 등〉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66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부여	3
2. 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 등 통보 의무를 부여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

급·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Ⅲ. 검토의견

1.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부여

- ☐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할 경우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④ (생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u>보증</u>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u>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u> 한다.	⑤ ----- ----- ----- <u>보증의 경우</u> ----- ----- ----- <u>을 지급하거나</u> ----- ----- <u>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 ☐ 현행 제13조의2제5항은 원사업자가 행하는 지급보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의 지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제13조의2제5항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받으면 수급사업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이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가 원사업자에게만 교부되므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제13조의2제1항¹⁾은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부 대상자에 원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1)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현행 규정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²⁾가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³⁾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202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으나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3)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4)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4)

2. 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 등 통보 의무를 부여

- 개정안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계약 해지된 경우, 그 사실을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⑤ (생략) ⑥ ~ ⑩ (생략) <u><신설></u>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u>⑪ 제5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

□ 개정안은 안 제13조의2제5항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목적으로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이 이루어지나 해지되면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계약의 유무를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임.

-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용이하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현행법에 보증기관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미 개정안 제13조의2제5항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임.⁵⁾

□ SGI서울보증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⁶⁾이 개정안처럼 보증기관에게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건설위탁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포함하는

5) 개정안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 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6)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의 정의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어⁷⁾ 지급보증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개정안 제1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보증서의 발급뿐만 아니라 보증계약의 해지까지 통보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보 대상에도 수급사업자 외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13조의2제5항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만으로 제11항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에서도 이미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발주자와 하수급인에게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계약의 해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보증기관의 업무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의 정도와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